



영국 명예훼손법 및 해설

Defamation Act 2013 and Explanatory Notes



번역 :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본 자료는 명예훼손에 관해 가장 오랜 판례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1952년, 1996년 및 2013년 세 차례 제정법으로 보완된 영국의 명예훼손법을 번역·편집하여 우리 명예훼손법의 입법과 해석에 참고가 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2013년 개정 법률의 조문을 해석하여 순서에 따라 게재하였고, 2013년 개정 시 법무장관이 개정안의 해설을 위해 공표한 내용을 각 해당 조문에 이어 'COMMENTARY'로 덧붙였습니다. 그 중 우리 법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게재를 생략했습니다.

- 번역자 주

【개요】

영국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법은 다년간 보통법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제정법인 1952년 명예훼손법과 1996년 명예훼손법에 의해 보완되었다. 2013년 명예훼손법은 영국 명예훼손법에 실제적 변경을 다수 가하였으나 명예훼손법을 단일한 제정법에 통합한 것은 아니다.

2013년 명예훼손법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의 관점을 개혁하여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간 공정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보호) 및 제10조(표현의 자유) 간에 공정한 균형이 취해지도록 요구하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특히 Von Hannover v Germany, (2005) 40 EHRR 1)의 기준에 따라 영국 법원이 충분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중한 손해의 요건 Requirement of serious harm】

제1조 중한 손해(Serious harm)

- (1) 진술은 그 공표가 원고의 명예에 중한 손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2) 본조의 취지에서 영리를 위해 거래하는 주체의 명예에 대한 손해는 그것이 그 주체에게 중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중한 손해가 아니다.

COMMENTARY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원고의 명예에 대한 실제적 및 실질적 불법행위(real and substantial tort)가 존재해야 한다(Jameel v Dow Jones & Co, [2005] EWCA Civ 75). 영국 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개인의 완전성에 대한 위협이 일정한 수준의 중요성이나 무게를 달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Wood v Commissioner for Police, [2009] EWCA Civ 414 at [22]; see also A v Norway (Application no. 28070/06)). 제소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중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중대한 손해의 하한요건("threshold of seriousness")을 정한 것은 사소한 손해로 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소한 사건은 절차의 남용으로 각하된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간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의미를 갖는다.

【 항변들 Defences 】

제2조 진실(Truth)

- (1) 불만 대상 진술에 의해 전달된 비난이 실질적으로 진실함을 입증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를 위한 항변이 된다.
- (2) 제3항은 불만 대상 진술이 두 가지 이상의 별개 비난을 전달하는 경우 명예훼손 소송에 적용된다.
- (3) 만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난이 실질적으로 진실함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본조에 의한 항변은, 실질적으로 진실함이 입증된 비난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진실함이 입증되지 아니한 비난이 원고의 명예에 중한 손해를 가하지 않으면, 배척되지 아니한다.
- (4) 보통법상의 정당화 항변은 폐지되며, 따라서 1952년 명예훼손법 제5조(정당화)는 폐지된다.

COMMENTARY

제2조는 보통법상의 정당화 항변(defence of justification)을 새로운 제정법상의 진실의 항변으로 대체한다. 현행법을 널리 반영하여 일정한 요소를 단순화하고 명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1항은 실질적 진실일 것(substantially true)을 요하는 새로운 항변이다. 피고는 그가 공표한 모든 단어가 진실일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최근 판례(Chase v News Group Newspapers Ltd, [2002] EWCA Civ 1772 at para 34)를 반영한다. 피고는 명예훼손의 통점에 관해 본질적인 또는 실질적인 진실("essential" or "substantial" truth of the sting of the libel)을 입증해야 한다.

오랜 보통법 규칙은 타인의 진술을 단지 반복하였음을 피고가 입증해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항변이 될 수 없다고 해 왔다("repetition rule"). 제1항은 이 규칙을 구현하기 위해 진술에 의해 전달된 비난에 초점을 맞춘다.

진실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언제나 쟁점이 되는 것은 i) 해당 진술에 의해 실제로 전달되는 비난이 무엇인가, 그리고 ii) 전달된 비난이 실질적으로 진실인가 여부이다. 이 항변은 비난이 사실인 경우 적용될 것이다.

제2항 및 제3항은(현행 제정법에서 의미있는 단 하나의 정당화 항변의 요소인) 1952년 법 제5조(Justification)를 대체한다. 그 효과는 불만 대상 진술이 두 가지 이상의 별개 비난을 포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진실함이 입증된 비난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진실함이 입증되지 않은 비난이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해하지 않으면, 그 항변은 배척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1952년 법 제5조도 같은 효과를 갖지만 더 현대적 용어로 표현된 것이다.

제4항은 보통법상의 정당화 항변을 폐지하고 1952년 법 제5조를 삭제하였다. 이것은 피고가 새로운 제정법상의 항변을 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은 현행 판례법이 아니라 제정법에 사용된 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확실한



경우 현행 판례법은 새로운 제정법상의 항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 구속적이진 않지만 유용한 가이드를 구성할 것이다.

제3조 정직한 의견(Honest opinion)

- (1) 다음 조건들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를 위한 항변이 된다.
- (2) 첫째 조건은 불만 대상 진술이 의견 진술인 경우.
- (3) 둘째 조건은 불만 대상 진술이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조건에 의해 그 의견의 근거를 제시할 것.
- (4) 셋째 조건은 (a) 불만 대상 진술이 공표된 당시 존재했던 어떤 사실; (b) 불만 대상 진술 이전에 공표된 특권적 진술 속의 사실이라고 주장된 바에 기해 정직한 사람이 가졌을 수 있던 의견일 것.
- (5) 이 항변은 피고가 정직한 의견을 갖지 않았음을 원고가 입증하면 배척된다.
- (6) 제5항은 타인(저자)이 행한 불만 대상 진술을 피고가 공표한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경우 그 저자가 정직한 의견을 갖지 않았음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을 원고가 입증하면 이 항변은 배척된다.
- (7) 제4항 (b)의 취지에서 한 진술이 특권적 진술이 되는 것은 그 공표에 책임있는 자가 그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음 항변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졌을 수 있었던 경우이다.
 - (a) 제4조에 의한 항변(공익 사항에 관한 공표);
 - (b) 제6조에 의한 항변(과학 또는 학술 저널의 동료심사가 이루어진 진술);
 - (c) 1996년 명예훼손법 제24조에 의한 항변(절대적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법원 절차의 보도);
 - (d) 동법 제15조에 의한 항변(제한적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보도)
- (8) 보통법상 공정한 논평의 항변(defence of fair comment)은 폐지되며, 따라서 1952년 명예훼손법 제6조는 폐지된다.

COMMENTARY

제3조는 보통법상 공정한 논평의 항변(defence of fair comment)을 새로운 정직한 의견(defence of honest opinion)의 항변으로 대체한다. 동조는 현행법을 반영하여 일정한 요건을 단순 명료화하였지만, 의견이 공익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현행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는 (자유 언론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설명되는) 보통법상 공정한 논평의 항변을 넓게 반영하나 의견이 공익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Spiller v Joseph [2010] UKSC 53 (at para 108; 113). 현행법상으로도 공정한 논평에서 공익은 널리 해석되어 왔고: 좁은 한계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정직한 의견의 항변이 적용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피고가 첫째, 불만 대상 진술이 의견 진술일 것, 둘째, 불만 대상 진술이 일반적이거나 또는 특수적 조건에서건 의견의 근거를 지켰을 것, 셋째, 불만 대상 진술이 공표된 당시에 존재했던 사실 또는 불만 대상 진술 이전에 공표된 특권적 진술 속에서 주장된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한 사람이 그 의견을 가졌을 수 있을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첫째 조건은 현행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진술이 사실의 비난과 구분되어 논평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Cheng v Tse Wai Chun Paul, (2000) 10 BHRC 525)를 포괄한다. 첫째 조건에서 평가는 통상인이 이해하는 방법에 근거한다는 점이 묵시적으로 포함된다. 사실의 추론(inference of fact)은 의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항변에 포괄될 것이다.

둘째 조건은 “논평은 최소한 일반적 조건에서 그것이 근거로 하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지적해야 한다”는 최고재판소 판례(Joseph v Spiller, [2010] UKSC 53 (at para 105))에 의해 승인된 기준을 반영한다. 둘째 조건 및 (제4항의) 셋째 조건은 명백하고 복잡하지 않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법을 단순화할 목적을 갖는다. 그 목적은 표현

된 의견을 위해 필요한 근거에 관해 현행 보통법상 항변의 넓은 원리를 유지하는 데 있고, 판례법에서 제기되어 온 복잡성, 특히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적 근거의 충분성 범위나, 그리고 진술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지적해야 하는 범위에 관한 복잡성을 피하려는 데 있다. 이것들은 보통법이 점차 더 복잡해지고 기술적으로 변하는 분야, 그리고 판례법이 특별한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해 명료성을 위해 노력해 온 분야이다. 예를 들면, 정치적 이슈에 관한 의견을 표현하는 기사, 소셜 네트워크에 만들어진 코멘트, 계약상 분쟁에 관한 견해, 또는 음식점이나 연극 심사평에 관하여 입증될 필요가 있는 사실들은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셋째 조건은 객관적 기준이고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만 충족되면 충분하다. 그 첫째 요소는 진술이 공표될 당시 존재했던 어떠한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한 자가 그 의견을 가졌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동항에서 “어떠한 사실”이란 관련 사실들이면 충분할 것이다. 사실적 근거(factual basis)의 충분성에 관한 현행 판례법은 “정직한 사람”이 그 의견을 가졌을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에 의해 커버된다. 만일 그 사실이 그 의견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아니었다면, 정직한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조건의 두 번째 요소는 정직한 사람이 불만 대상 진술 이전에 공표된 특권적 진술 속의 사실이라고 주장된 어떤 것에 근거하여 그 의견을 형성했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이 목적에서 진술에 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공표에 책임 있는 인물이 제7항에 열거된 항변의 하나를 가졌을 수 있다면, 그 진술은 특권적 진술이다. 목록상 항변은 1996년 법 제 14조에 의한 절대적 특권의 항변; 동법 제15조에 의한 제한적 특권의 항변; 그리고 공적 이익 사항에 관한 책임있는 공표와 과학적 또는 학술적 저널 속의 동료심사가 이루어진 진술에 관한 본법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된 항변이다.

제5항은 피고가 정직한 의견을 갖지 않았음을 원고가 입증하면 항변이 배척됨을 규정한다. 이것은 주관적 기준이다. 이것은 원고가 그 진술이 악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공정한 논평의 항변이 배척된다는 현행법을 반영한다.

제6항은 (예컨대, 논평 기사에 관해 그 작성자 대신 신문 편집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저자가 아닌 경우를 위한 규정이다. 이들 상황에서 만일 저자가 정직한 의견을 가지지 않았음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을 원고가 입증하면 그 항변은 배척된다.

제8항은 보통법상 공정한 논평의 항변을 폐지한다.

제8항은 1952년 법의 제6조도 폐지한다. 제6조는 일부 사실주장이고 일부 의견표현으로 구성되는 말에 관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정한 논평의 항변은, 만일 의견의 표현이, 불만 대상 어구 속에 주장되거나 언급된 사실로서 사실로 입증된 것에 관련해 공정한 논평이라면, 모든 사실 주장의 진실함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제4항에 정해진 접근방법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필요 없다. 피고는 불만 대상 진술에 관련된 모든 개별 사실 주장의 진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첫째, 둘째, 셋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조 공익 사항에 관한 공표(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

(1) 명예훼손 소송에서 다음을 입증하면 피고를 위한 항변이 된다.

- (a) 불만 대상 진술이 공익 사항에 관한 진술이었거나 그 일부를 이룬 것; 그리고
- (b) 불만 대상 진술의 공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믿었음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제1항에 언급된 사항을 입증하였는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사건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3) 불만 대상 진술이, 원고가 일반 당사자였던 논쟁의 정확하고 공평한 설명이었거나 그 일부였던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의 공표가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피고가 믿는 게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그에 의해 전달된 비난의 진실을 입증



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시해야 한다.

- (4) 피고가 불만 대상 진술의 공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었는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편집적 판단을 참작하여야(allowance for editorial judgement) 한다.
- (5) 의문을 피하기 위해 본조에 의한 항변은 불만 대상 진술이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인지 여하를 불문하고 행사될 수 있다.
- (6) 레이놀즈 항변(Reynolds defence)으로 알려진 보통법상의 항변은 폐지된다.

COMMENTARY

제4조는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새로운 항변으로서 공적 이익 사항에 관한 책임있는 공표의 항변을 창설한다. 그것은 Reynolds v Times Newspapers [2001] 2 AC 127 사건에서 확립된 현행 보통법상의 항변에 기한 것이고, 그 사건과 추후 판례에서 확립된 원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1항은 불만 대상 진술이 공적 이익 사항에 관한 진술이었거나 그 일부를 형성하며, 그가 그 진술의 공표에 책임있게 행동했음을 피고가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변을 규정한다.

이 기준의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본조는 공적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정의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 보통법에서 잘 확립된 개념이다. 그 항변은 불만 대상 진술이 공적 이익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것이 담겨진 문서, 기사 등의 넓은 맥락에 따라, 이 전부가 공적 이익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술이 생 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기준에 관해 제2항은 피고가 진술을 공표할 때 책임있게 행동하였는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의 리스트를 정한다. 이들은 Reynolds 사건과 추후의 판례법에서 귀족원에 의해 설립된 요소들에 널리 기 반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는 항변의 범위에 관한 명료성의 흠결 등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려고 추구한다. 예를 들면, 동 조가 적용되는 융통성 있는 방법과 발행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 및 그에 가용적이었던 자력을 참작할 필요를 반영 하기 위해(예를 들어 전국지와 비정부기관 또는 과학 저널의 맥락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 제2항 (a)에 “공표의 성 질과 그 맥락”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제2항에 열거된 요인들은 체크리스트나 피고가 극복할 장애의 세트로 작용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고, 법안은 법원 이 각 사례의 전체 상황과 공표 전체의 맥락 내에서 적합하다고 고려하는 예시적 및 비전체적 방식으로 그들을 정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기준은 법원이 피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위했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둘째 기준은 단지 피고가 책임있게 행동했는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이것은 판례법에서 종 중 편집 재량(“editorial discretion”)으로 언급되는 바를 위해 참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신문에 의한 채택 대신 귀속된 주장의 중립적 보도(neutral reporting)를 묘사하기 위해 편리한 말로서” 법원에 의해 설명된) 보통법상 현장보도의 법리(doctrine of “reportage”)의 핵심을 요약하려는 것이다. 이 법 리가 적용되는 경우, 그 보도가 제시되는 방법은 균형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피고는 공표 전에 보도된 정보의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3항은 공표가 원고와 다른 당사자 간의 논쟁에 관한 정확하고 불편부당한 설명(accurate and impartial account of a dispute)인 상황에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조의 취지에서 피고가 책임있게 행동했는가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서 법원은 피고 측에서 그 공표에 의해 전달된 비난의 진실을 입증하려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시해야 한다 (피고가 그 진술에 관해 원고의 견해를 들으려 하지 않은 점을 물론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피고 신문은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입증 불이행 때문에 편파적으로 취급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5항은 의문을 피하기 위해, 불만 대상 진술이 사실이거나 의견이거나에 상관없이 본조에 규정된 항변에 근거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한다.

제6항은 Reynolds defence라고 알려진 보통법상의 항변을 폐지한다. 왜냐하면 제정법적 항변은 본질적으로 보통법상의 항변을 법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법상의 항변을 폐지함은 법원이 제정법에서 사용된 문구를 적용할 것이 요구됨을 의미하지만, 현행 판례법은 새로운 제정법상의 항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해석하는 (구속적이지는 않지만) 유용한 가이드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법원은 적절한 경우 현존하는 판례법을 고려할 것이 기대된다.

제5조 웹사이트 운영자(Operators of websites)

- (1) 본조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진술에 관해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 적용된다.
- (2) 웹사이트에 진술을 게시한 자가 운영자가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은 운영자의 항변이 된다.
- (3) 원고가 다음을 입증하면 항변은 배척된다.
 - (a) 원고가 그 진술의 게시자를 특정(확인)할 수 없고
 - (b) 원고가 운영자에게 그 진술에 관해 불만의 고지를 행하였고
 - (c) 운영자가 시행규칙¹⁾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불만의 고지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경우
- (4) 제3항 (a)목의 경우 원고가 그 인물에 대해 제소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진 경우에만 원고는 그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
- (5) 시행규칙에는 다음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 (a) 불만의 고지에 대한 대응으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취할 것이 요구되는 조치에 관한 규정(그것은 특히 그 진술을 게시한 자의 신원이나 연락 세목에 관한 조치 및 진술 제거에 관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 (b) 그러한 조치를 취할 시한을 명시하는 규정;
 - (c) 그 시한 경과 후 취해진 조치를 경과 전에 취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재량을 법원에 부여하는 규정;
 - (d) 기타 본조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규정
- (6) 제7항에 의해 제정된 어떤 규정에 따라, 불만의 고지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a) 원고 성명의 기재
 - (b) 문제되는 진술의 확정 및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유의 설명
 - (c) 그 진술이 게시된 웹사이트의 위치의 특정
 - (d) 기타 시행규칙에 규정될 정보의 포함
- (7) 시행규칙은 불만의 고지는 아닌 고지가 본조 또는 그에 의해 제정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불만의 고지로 취급될 상황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 (8) 본조에 의한 시행규칙은
 - (a) 상이한 상황에 따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고;
 - (b) 명문 문서에 의해야 한다.
- (9) 본조에 의한 시행규칙을 포함하는 명문 문서는 그 문서들의 초안이 사전에 제출되어 양원의 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본조에서 '시행규칙'이란 국무장관에 의해 제정된 규정을 말한다.

1) 2013년 명예훼손법 제5조와 관련하여 웹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시행규칙(The Defamation (Operators of Websites) Regulation 2013)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법 제5조 제3항 (c) 운영자가 시행규칙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불만의 고지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행규칙의 별표(Schedule) 조항에 부합하여 불만의 고지에 회신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불만자(청구인)가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운영자는 법 제5조 제2항의 항변에 의존한다.



- (11) 본조에 의한 항변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문제 진술의 게시와 관련하여 악의로 행동했음을 원고가 입증하는 경우에 배척된다.
 (12) 본조의 항변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에 의해 게시된 진술을 조정(moderated)했다는 이유로 배척되지 않는다.

COMMENTARY

제5조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그 웹사이트에 게시된 진술에 관해 명예훼손 제소가 된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를 위한 새로운 항변을 신설한다.

제2항은 운영자가 그 웹사이트에 진술을 게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용할 항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²⁾ 제3항은 원고가 그 진술을 게시한 자를 알 수 없었고, 그 진술에 관해 운영자에게 불만의 고지를 했고, 운영자가 국무장관이 제정한 시행규칙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그 고지에 따르지 않은 것을 입증하면 그 항변이 배척됨을 정한다.

제4항 및 제6항은 불만의 고지에 기재할 일정한 상세 정보를 정한다. 그 고지에는 불만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며, 관련 진술과 그 진술이 게시된 웹사이트의 위치를 기재해야 하고, 불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불만의 고지에 포함될 기타 정보³⁾를 명시할 수 있다.

제5항은 시행규칙들에 포함될 기타 일반적 조건에서 규정들의 세목을 정한다. 이들은 고지에 대한 대담으로 운영자가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한 규정(특히 진술을 게시한 자의 신원 또는 연락 세목에 관한 조치, 그리고 게시의 제거에 관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을 취할 시한 및 시한 경과 후 취한 행위를 그 경과 전에 취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재량을 법원에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것은 법원이 적절하게 시한을 포기하거나 소급하여 시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허용할 것이다.

2) 웹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시행규칙(The Defamation (Operators of Websites) Regulation 2013)의 별표(Schedule)에 따르면, 법 제5조 제2항의 항변을 위해, 운영자가 불만의 고지에 대해 취해야 할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웹사이트 내 진술의 삭제, 불만의 고지 접수 후 48시간 내 게시자에게 '불만의 고지 사본'과 '불만의 대상이 된 진술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통지' 등 보내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운영자는 불만의 고지에 명시된 시한의 마지막 날(불만의 고지가 전달되고 나서부터 5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게시자로부터 회신을 받는다. 회신을 통해 게시자는 그 진술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기 원하는지 아닌지를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삭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게시자는 자신의 성명과 집 주소 및 회사 주소 등을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운영자가 불만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운영자가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불만의 대상이 된 진술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통지 보내기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영자는 불만의 고지 접수 후 48시간 내 불만의 대상이 된 진술을 삭제해야만 한다. 운영자가 게시자와의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게시자의 전자우편이나 전자메시지 등이 운영자에게 없는(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게시자가 5일째 되는 날까지 회신하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 운영자는 진술을 삭제하고 불만자에게 그 진술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음을 알리는 고지를 48시간 내로 보내야 한다. 게시자가 진술이 삭제되기 원한다고 회신할 경우, 운영자는 그 회신을 받고 48시간 내로 진술을 삭제하고 불만자에게 진술이 삭제됐음을 알리는 고지를 보내야 한다. 반면 게시자가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회신할 경우, 운영자는 그 회신을 받고 48시간 내로 게시자가 삭제를 원하지 않으며 진술이 삭제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게시자가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불만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정보를 불만자에게 제공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불만자에게 고지한다. 동일한 혹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재게시하는 경우, 운영자가 동일 불만자로부터 두 가지 이상의 예전 경우에 관한 진술과 관련하여 불만의 고지를 받았고, 각각의 경우 그 진술이 이 시행규칙 별표 내용에 따라 삭제된 경우, 운영자는 그 진술과 관련하여 불만의 고지를 더 받는다. 불만자는 두 가지 이상의 예전 경우에 관한 진술과 관련하여 불만의 고지를 보낸 바 있음을 운영자에게 알린다. 이런 경우, 이 시행규칙 별표 내용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운영자는 반드시 웹사이트에서 진술을 삭제해야 한다. 여기서 진술이란 불만의 고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혹은 거의 동일한 비난이나 비방을 전달하고, 동일한 웹사이트에, 동일한 사람에 의해 게재된 것을 말한다.

3) 웹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시행규칙(The Defamation (Operators of Websites) Regulation 2013) 및 Guidance on Section 5 of the Defamation Act 2013 and Regulations에 따르면, 불만의 고지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정보로는 불만자가 게재된 진술의 어떠한 면을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지, 불만자가 그 진술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게시자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확인 등이 있다.

제6조 과학 또는 학술 저널 등에서 동료에 의해 심사된 진술(Peer-reviewed statement)

- (1) 과학 또는 학술 저널에서 진술의 공표(전자적 형태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표된 것을 불문한다)는 다음 조건이 충족된 경우 특권이 된다.
- (2) 첫째 조건은 그 진술이 과학 또는 학술적 사항에 관한 것.
- (3) 둘째 조건은 저널에 진술이 공표되기 전에 그 진술의 과학적 또는 학술적 가치(merit)에 관한 독립적인 심사가 (a) 그 저널의 편집자 및 (b) 1인 이상의 관련 과학 또는 학술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 (4) 과학 또는 학술 저널에서 진술의 공표가 제1항에 의해 특권적인 경우 동일한 저널에서 그 진술의 과학적 또는 학술적 가치의 평가의 공표는
 - (a) 그 평가가 그 진술의 독립적 심사를 수행한 1인 이상의 자에 의해 작성되었고,
 - (b) 그 평가가 그 심사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을 조건으로 특권을 갖는다.
- (5) 본조에 의해 진술 또는 평가의 공표가 특권이 되는 경우 그 진술이나 평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복제, 요약이나 발췌의 공표도 역시 특권이 된다.
- (6) 공표가 악의로 행해졌음이 입증되면 본조에 의한 특권이 되지 않는다.
- (7) 본조의 어떤 것도 (a) 법률에 의해 금지된 사항의 공개를 보호하는 것으로; (b) 본조와 별도로 성립하는 특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8) 제3항 (a)에서 '저널의 편집자'란 1인 이상의 편집자를 가진 저널의 경우 관계 진술의 공표 결정에 책임있는 편집자나 편집자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COMMENTARY

제6조는 과학 또는 학술 저널에서 동료에 의해 심사된 자료에 관해 새로운 제한적 특권의 항변을 창출한다. 의학 저널도 이에 포함된다.

제1항 내지 제3항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경우 적용할 항변을 규정한다. 첫째 조건은 그 진술이 과학적 또는 학술적 사항에 관한 것임, 둘째 조건은 저널에 진술이 공표되기 전에 그 진술의 과학적 또는 학술적 가치(merit)에 관한 독립적인 심사가 그 저널의 편집자 및 1인 이상의 관련 과학 또는 학술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것임. 둘째 조건의 요건은 책임있는 동료심사 프로세스의 핵심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8항에서 저널의 편집자란 1인 이상의 편집자를 가진 저널의 경우 관계 진술의 공표 결정에 책임 있는 편집자나 편집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편집인 회의체(board of editors)가 결정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할 수 있다.

제4항은 그 항변에 의한 보호를, 동일한 저널에서 동료심사가 이루어진 진술의 과학적 또는 학술적 가치의 평가의 공표에까지 확대하는데, 거기에는 그 평가가 그 진술의 독립적 심사를 수행한 1인 이상의 자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평가가 그 심사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것은 그 특권이 동료심사가 이루어진 진술의 저자뿐 아니라 독립적인 심사를 수행한 자로서, 예를 들어 저자에 의해 원래 제출된 논문을 평가할 필요가 있거나 코멘트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5항은 동조에 의해 동료심사가 이루어진 진술과 관계 평가에 부여된 특권이 관련 진술이나 평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복제, 요약이나 발췌의 공표에도 확대된다고 규정한다.

제6항에 의해, 동조에 의해 주어진 특권은 만일 그 공표가 악의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입증되면 상실되는데, 그것은 다른 형태의 제한적 특권에 부착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다. 새 조문이 과학 또는 학술 저널에 진술을 공표하는 자가 다른 형태의 특권, 즉 제7조 제9항에 의해 과학 또는 학술 회의의 절차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등에 주어지는 특



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읽혀지지 않게 하려고 제7항 (b)를 넣었다.

제7조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보도 등(Reports etc protected by privilege)

[법 조문 생략]

COMMENTARY

제7조는 1996년 법에 포함된 절대적 및 제한적 특권의 항변에 관한 규정을 이들 항변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1항은 법원 절차의 공정하고 정확한 동시 보도(fair and accurate contemporaneous reports of court proceedings)에 적용되는 절대적 특권에 관한 1996년 법 제14조 제3항을 대체한다. 현재 제14조 제3항은 영국 내 법원, 유럽사법재판소 및 그 부설 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그리고 유엔 안보회의 또는 영국이 참가한 국제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형사법정의 공개 절차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에 적용될 절대적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이것을 새로운 항으로 대체하는데, 그것은 그 항변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국 밖의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원의 절차 및 유엔 안보회의 또는 국제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 법원 및 법정에서의 절차도 커버하게 하고 있다.

제2항은 1996년 법의 제15조 제3항에서 사용된 '공적 이익'이란 문구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공적 관심'이란 용어로 대체한다. 제6항 (b)는 공적 회의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등(fair and accurate reports etc of public meetings)에 확대된 특권에 관해 1996년 법의 별표1의 12호 (2)에서 동일한 개정을 한다.

제3항 내지 제10항은 1996년 법 별표1 제2부를 개정하여 여러 분야에서 제한적 특권의 항변이 적용가능한 상황을 확대한다. 1996년 법 제15조 및 별표1은 현재 여러 타입의 보도나 진술에 적용될 제한적 특권을, 공적 관심 사항에 관한 보도나 진술이 공정하고 정확함, 그리고 그 공표가 공공 편익을 위한 것이고 악의 없이 행해졌음을 조건으로, 규정한다. 별표1 제1부는 설명이나 반박 없이 제한적 특권을 끌어들이는 공표의 범주를 정한다. 이들은 세계 어느 곳이든 (국가 및 지방 양자의) 입법부, 법원, 공적 조사, 국제 조직이나 회의, 그리고 이들 주체에 의해 공표된 문서, 고지 및 기타 사항의 공개된 절차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fair and accurate reports of proceedings in public)를 포함한다.

별표1 제2부는 제한적 특권의 보호를 받는 공표의 범주를 정하는데, 그 공표자가 요구된 경우, 설명 또는 정정의 방법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서신이나 진술의 공표를 거부하거나 태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들 중에는 정부 또는 (경찰 같은)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당국 또는 법원에 의해 공공을 위해 공표되는 정보의 복사 또는 발췌; (지방 당국 등의) 공적 회의 및 영국 공기업의 일반 회의에서 절차에 관한 보도; 그리고 영국 또는 EU 내에 설립된 협회(예술, 과학, 종교 또는 학습, 상거래 협회, 스포츠협회 및 자선협회 등)의 사실확인이나 결정(findings or decisions)에 관한 보도가 포함된다.

항변이 확대되는 여러 타입의 공표로부터의 공정하고 정확한 복제 또는 발췌에 이미 제공되는 보호에 더해, 동조 제4항, 제7항 (b) 및 제10항은 공정하고 정확한 자료의 요약을 커버하기 위해 제한적 특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행한다. 예를 들어, 제4항은 그 항변을 공공의 정보를 위해 다수의 정부 기관에 의해 발행된 고지나 기타 사항의 요약, 그리고 법원에 의해 제공되는 문서의 요약에 확대한다.

현재 별표1 제1부의 제한적 특권은 입법부; 법원; 그리고 세계의 기타 다수 포럼의 공개된 절차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에 확대된다. 그러나 제2부의 제한된 특권은 영국 및 EU 국가 내에서 생기는 공표에만 적용된다. 제4항, 제6항 (a), 제7항 및 제8항은 그 항변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계 각지의 여러 타입의 공표를 커버한다. 예를 들어 제6항은 공

적 회의 절차에 관한 보도에, 제8항은 일정한 종류의 협회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다.

제5항은 세계 각지에서 공적 이익 사항에 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된 기자회견(press conference)에서의 절차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에 제한적 특권을 확대한다. McCartan Turkington Breen v Times Newspapers Ltd에서 실시된 바와 같이 현행법에 의하면 기자회견은 1996년 법 별표1의 제12조의 공적 회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제2부의 제한적 특권은 영국 공기업의 일반 회의 및 문서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에만 확대된다. 제7항은 이를 세계 각지의 공기업에 관한 보도에 이를 확대한다.

제9항은 1996년 법 별표1에 새로운 호를 삽입하여 과학 회의 또는 학술 회의의 절차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및 그러한 회의에 의해 공표된 사항의 복제, 발췌 및 요약에 별표2의 제한적 특권을 확대한다.

【 단일 공표 규칙 Single publication rule 】

제8조 단일 공표 규칙(Single publication rule)

- (1) 본조는 (a) 공공에 진술을 공표한 자(최초 공표자)가 (b) 그 진술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술을 (공공에게 하든 하지 않든) 다시 (subsequently) 공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제1항에서 “공공에 공표”에는 공공의 한 부분에 대한 공표를 포함한다.
- (3) 1980년 기간제한법 제4A조(명예훼손 소송의 제소기간)⁴⁾의 취지에서 재공표(subsequent publication)에 관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인(cause of action)은 최초 공표일에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4) 본조는 최초 공표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행해진 경우 재공표에 적용되지 않는다.
- (5) 재공표의 방법이 최초 공표와 실질적으로 다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사항에는 (여타 사항 중) 다음이 포함된다.
 - (a) 진술에 주어지는 주목도(prominence)의 수준
 - (b) 재공표의 범위
- (6) 본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 (a) 1980년 기간제한법 제32A조(명예훼손 소송 등에 대한 제소기간 배척의 재량)⁵⁾에 의한 법원의 재량에는 영향이 없으며,

4) 참고로 1980년 기간제한법(Limitation Act 1980) 제4A조(명예훼손 소송의 제소기간)에는 “소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에는 소송이 제기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으며 이 내용이 1996년 명예훼손법 제5조 제소기간(Limitation of actions: England and Wales)에 편입되었다.

5) 참고로 1980년 기간제한법(Limitation Act 1980) 제32A조(명예훼손 또는 악의적 허위 소송 제소기간의 재량에 의한 배제)에는 “(1) (a) 본법 제4A조의 운영이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불리하게 하고 (b) 본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을 불리하게 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소송의 진행을 허용함이 형평에 맞는 것으로 법원이 생각하는 경우, 법원은 동 조항이 그 소송에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그 소송에 관한 특정 소인에 적용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법원은 본조에 의해 행위함에 있어서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a) 원고 측의 기간 지연의 길이 및 그 이유 (b) 그 지연의 이유가 제4A조의 기간 만료 시까지 소인에 관련된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 경우에는 (i) 그가 그 문제 사실을 안 시점 및 (ii) 그 문제 사실이 소인을 발생시킬지 모를 사실을 알고 그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 범위 (c) 지연을 고려해 관련 증거가 (i) 사용불가능하였거나 (ii) 제소기간 내에 제소된 경우보다 더 적합하지 않은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부동산, 상품의 구두 명예훼손 혹은 기타 악의적 허위 소송이 개인적 대표에 의해 제기된 사례에서 (a) 위 제2항의 원고에는, 소인이 발생했던 고인과 그의 이전 개인적 대표자가 포함되며 (b) 본법 제28조 제3항은 본조에 의한 법원의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으며 이 내용이 1996년 명예훼손법 제5조 제소기간(Limitation of actions: England and Wales)에 편입되었다.



(b) 동조 제1항 (a)에서 동법 제4A조의 운영에 관한 언급은 본조와 제4A조의 운영에 관한 언급이다.

COMMENTARY

제8조는 동일 공표자에 의한 동일한 자료의 공표에 관해, 그 자료를 공공 또는 그 일부에 최초 공표한 날부터 1년 경과 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 공표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명예훼손적 자료의 공표 각각이 그 자체의 제소기간(limitation period)을 갖는 별개의 소인을 발생시킨다는 오래된 원리(the “multiple publication rule” 복수 공표 규칙)를 대체한다.

〈제8조는 동일한 공표자에 의한 동일한 자료의 공표와 관련하여 최초 공표일 이후 1년을 경과하여 제소를 제한하는 단일 공표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다. 제소기간은 법원에의 효과적인 접근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를 끌어들이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중요한 목적, 즉 법적 확실성과 중국성을 보증함에 기여한다.” 동조는 원고가 그의 명예를 옹호하기 위해 제소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항은 1980년 기간제한법 제32A조에 의해 소송 진행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경우 법원이 제소기간을 포기할 재량을 보유함을 확인하고 있다.〉

제1항은 동 조항이 공공(또는 제2항에 공공의 일부에 대한 공표를 포함)에 진술을 공표하는 경우, 그리고 이어서 그 진술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술을 공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그 목적은 동 조항이 동일한 내용 또는 변경이 너무 사소하여 명예훼손적 진술의 본질이 이전 공표에 포함된 진술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에 대한 공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표에서 문제가 대면되는 것은 이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 규정이 공공일반에 대한 공표에 이르는 것만을 포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개시 시점으로 선택되었다. 제2항의 정의는 한정된 수의 사람에 대한 공표(예컨대, 블로그가 소그룹의 가입자나 팔로워를 가진 경우)가 커버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제3항은 본조의 범위 내의 추후 공표와 관련해 제기된 소의 소인에 관한 제소기간은 최초 공표의 일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제4항은 추후 공표의 진술의 방법이 최초 공표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다른(“materially different”) 경우에 단일 공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정한다. 제5항은 이 쟁점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사항에 진술에 주어지는 주목성의 수준(level of prominence)과 추후 공표의 범위가 포함됨을 정한다. 가령 한 스토리가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웹사이트 섹션에 있어서 수차 클릭을 거쳐야만 그것에 액세스할 수 있었으나 추후에 그 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액세스될 수 있어 그 히트 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증진된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이다.

제6항은 동조가, 형평에 맞도록 1년 넘는 제소기간에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될 수 있게 허용하는, 1980년 기간제한법 제32A조에 의한 법원의 재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32A조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할 것을 요하는 넓은 재량을 정하며, 그것은 기간 제한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조에 의해 야기되는 부당함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 Jurisdiction 관할권 】

제9조 영국 또는 가입국 등의 비거주자에 대한 소송

(Action against a person not domiciled in the UK or a Member State etc)

- (1) 본조는 (a) 영국 (b) 타 가입국 또는 (c) 루가노 협약 체결 당사자인 국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적용된다.
- (2) 불만 대상 진술이 공표된 모든 장소 중에서 영국과 웨일즈가 그 진술에 관해 제소함에 명백히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법원이 만

- 족하지 않으면, 법원은 본조가 적용되는 소송을 심리 및 결정할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 (3) 제2항에서 불만 대상 진술에 관한 언급은 그것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난을 전달하는 진술에 관한 언급을 포함한다.

COMMENTARY

제9조는 명예훼손 관광("Libel tourism")의 문제에 대처할 목적을 갖는다. 유럽의 관할 규칙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제1항은 영국과 그다지 큰 연계를 가지지 않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송을 피해자에게 유리한 명예훼손법을 갖는 영국 법정에 제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2항은 영국 법원이 명예훼손 심리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 영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갖지 않음을 규정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10만부가, 영국에서는 5,000부만이 발행된 경우 영국 법원이 아닌 호주 법원에 관할이 인정됨을 의미한다.

제3항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명예훼손적 진술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 제2항이 적용됨을 정한다.

제10조 저자, 편집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소송 (Action against a person who was not the author, editor etc)

- (1) 불만 대상 진술의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에 대한 제소가 합리적으로 실용적인 한, 법원은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이 아닌 자에 대해 제기된 소송을 심리하고 결정할 관할을 갖지 않는다.
- (2) 본조에서 '저자', '편집자' 및 '발행인'은 1996년 명예훼손법 제1조(공표의 책임)⁶⁾에서의 의미와 같다.

COMMENTARY

제10조는 명예훼손적 진술의 원래 공표자가 아닌 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한다.

제2항은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이다.

6) 1996년 명예훼손법 제1조(공표의 책임) 중 '저자', '편집자' 및 '발행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저자("author"), 편집자("editor") 또는 발행인("publisher")은 제3항에서 상술되는 바와 같이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저자는 진술의 원작자(originator)로서 그의 진술이 공표되기를 의도하지 않은 자를 제외하며; 편집자는 진술의 내용 또는 공표의 결정에 편집 또는 동등한 책임을 갖는 자를 의미하며; 발행인은 영업적 발행인(commercial publisher), 즉 그의 영업이 공공 또는 공공의 일부에 대해 자료를 내는 자로서 그 영업의 과정에서 그 진술을 포함하는 자료를 내는 자를 의미한다.

(3) 오직 다음의 행위에만 참여한 자는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a) 해당 진술을 포함하는 인쇄자료를 인쇄, 제작,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b) 해당 진술을 포함하는 영화나 음반을 처리, 복제, 배포, 전시 또는 판매하는 행위;

(c) 해당 진술이 기록된 전자매체를 처리, 복제,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또는 해당 진술이 전자적 형태로 검색, 복제 배포되거나 사용 가능한 수단에 의해 장비,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작업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d) 해당 진술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진술을 포함하는 라이브 프로의 방송사인 경우

(e) 해당 진술이 자신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에 의해 전송 또는 사용가능한 수단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운 영하는 자 또는 제공자인 경우 (a) 내지 (e)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 인물이 해당 진술의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으로 간주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들을 유추할 수 있다.

(4)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의 피고용자나 대리인은 그들이 해당 진술의 내용 또는 그 발행 여부 결정에 책임 있는 한도에서 그들의 사용자나 본인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 배심 재판 Trial by jury 】

제11조 법원 명령이 없는 한 배심 없이 재판 가능

(Trial to be without a jury unl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법 조문 및 해설 생략]

【 법원 판결의 요지 Summary of court judgement 】

제12조 법원 판결의 요지가 공표되도록 명할 법원의 권한

(Power of court to order a summary of its judgement to be published)

- (1)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를 위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요지를 공표하도록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 (2) 요지의 문안 작성과 그 공표의 시간, 방법, 형태 및 장소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한다.
- (3) 당사자들이 문안 작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 (4) 당사자들이 공표의 시간, 방법, 형태 및 장소에 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상황에 따라 상당하고 실용적이라고 간주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5) 본조는 법원이 1996년 명예훼손법 제8조 제3항(청구의 약식 처분)에 따라 원고를 위해 판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OMMENTARY

1996년 법 제8조에 의한 약식 재판 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에 시정이나 사죄 내용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패소한 피고에게 그 판결 요지의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12조는 명예훼손 절차에서 법원이 더 일반적으로 그 판결 요지를 공표하도록 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1항은 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를 위해 피고가 그 판결의 요지를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그 요지의 문안 작성과 공표의 시간, 방법, 형식 및 장소가 당사자 간 합의할 사항임을 정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법원이 그 문안 작성을 해결할 수 있고, 공표의 시간, 방법, 형식 및 장소에 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생각되는 바대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5항은 법원이 1996년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약식 재판 절차는 적절한 경우 계속 사용될 수 있는 별도의 절차이다.

【 진술의 삭제 등 Removal, etc of statement 】

제13조 진술의 삭제 또는 배포 중지 명령 등

(Order to remove statement or cease distribution etc)

- (1)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명할 수 있다.
 - (a) 명예훼손적 진술이 게시된 웹사이트 운영자가 그 진술을 삭제할 것 또는
 - (b) 명예훼손적 진술의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이 아니었던 자에게 그 진술을 포함하는 자료의 배포, 판매 또는 전시를 중지할 것.
- (2) 본조에서 저자, 편집자 및 발행인은 1996년 명예훼손법 제1조에서의 의미와 같다.
- (3) 제1항은 동향에서 벗어난 법원의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OMMENTARY

제13조는 명예훼손적 진술의 저자가 그 진술이 전파·확산되는 것을 막거나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항상 있지는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제1항은 법원이 원고의 명예훼손 건을 판단할 때, 명예훼손적 진술이 게재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진술을 제거하거나 그 진술의 저자, 편집자, 혹은 발행인이 아니더라도 그 진술을 배포, 판매, 또는 전시한 자라면 그 확산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 절차가 결론 나는 동안 혹은 결론 나는 즉시 그 진술이 삭제될 수 있게 한다.

【 구두 명예훼손 Slander 】

제14조 구두 명예훼손에서 특별 손해(Special damage)

- (1) 1891년 여성 구두 명예훼손법은 폐지한다.
- (2) 사람이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을 갖는다고 하는 비난을 전달하는 진술의 공표는, 그것이 그에게 특별 손해를 발생하지 않는 한 구두 명예훼손의 소인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COMMENTARY

제14조는 1891년 여성 구두 명예훼손법을 폐지하며 특별 손해에 관한 보통법 규칙을 반복한다.

구두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공표가 일정한 특별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불만 대상 진술에서 나온 특별 손해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진술되고 공표된 말로서 여성의 부정 또는 간통을 비난하는 것은 그 제소에 특별 손해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1891년 법의 규정이 포함된다. 제1항은 동법을 폐지함으로써 이들 상황에서도 특별 손해의 요건이 면제되지 않게 하고 있다.

제2항은 불만 대상 진술에 의해 전달된 비난이 원고가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면 특별 손해의 요건을 면제하는 보통법 규칙을 폐지한다. 19세기 이전부터 판례법에서 나병, 성병 및 전염병 비난 사건에는 그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되어 왔다.

제15조 이하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법 조문 및 해설 생략]